



등록 번호 : 20180962
최초 등록일 : 2018.09.17
최종 등록일 : 2024.10.10

홈페이지 : www.jokumeon.com
이메일 : wonja5711@hanmail.net

조구먼반상

정 보 공 개 서

(주)맛있는 상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맛있는 상상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 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 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6번길 4-35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688-5911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31-322-4908

가맹사업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 관리팀 031-322-461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3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4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4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1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3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6
ix.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신설)-----	48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맛있는 상상	종구면반상 외 3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6번길 4-35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05.05.06.	2005.05.06	오 원 자	1688-5911	031-322-4908
	법인 등록번호	110111-3222661	사업자등록번호	220-87-08913	

2. 특수 관계인 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오 원 자	종구면반상 외 3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6번길 4-3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오 원 자	031-322-4992	031-322-490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정 두 화	종구면반상 외 3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6번길 4-3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오 원 자	031-322-4992	031-322-490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오 원 현	종구면반상 외 3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6번길 4-3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오 원 자	031-322-4992	031-322-490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종구면반상”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종구면반상	“좋다”를 충청도 사투리로 표현하여 반상브랜드를 이미지화 함
상 호	종구면반상 ○○ 점	행정 동의 명칭이나 역의 명칭을 사용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0954970000

[종구면반상] 은 영업표지 홍보를 하고 사진 등의 자료도 첨부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 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441,136	1,076,529	-635,393	1,591,794	10,091	20,223
2022년	592,227	1,061,879	-469,652	1,741,540	131,679	165,741
2023년	531,617	970,516	-438,899	1,759,982	36,327	30,753

그 근거자료는 별첨1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오 원 자	대표 이사	1998.02.17.~2019.04.16	종구면 광주점 대표	종구면 운영
			2005.05.06~2005.10.16	이사	가맹점 관리
			2005.10.17~현재	(주)맛있는 상상 대표이사	업무 총괄
			2010.10.01~현재	종구면식품 대표	종구면식품 운영
	정 두 화	이사	2005.04.10~2014.11.03	종구면식품 대표	종구면식품 운영
			2005.05.06~2005.10.16	(주)맛있는상상 대표이사	업무 총괄
			2005.10.17~현재	(주)맛있는상상 이사	가맹점 관리
	오 원 현	감사	2013.11.20~2014.11.25	우리미 대표	우리 미 운영
			2014.03.11~현재	(주)맛있는상상 비상근 감사	회사 업무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본부	종구면점	카페탈로점 (비가맹사업)	계
2023년 12월 31일	2	1	2	-	22	2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맛있는 상상	가맹사업 경영	2014.09.03. ~ 현재	밥엔청국장 (등록번호:20140822)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05.11.20. ~ 현재	찌개애감동 (등록번호 : 20080100148)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0.05.10. ~ 현재	월선네 (등록번호 : 20100100412)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7.09.09. ~ 현재	종구면반상 (등록번호 : 20180962)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배우자)	정두화	가맹사업 경영	2021.01.01..~2022.03.31	월선네 영업표지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 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 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종구면반상 (상표권)	종구면 과 종구면반상 브랜드에서만 사용가능	2003.12.12	등록 제4100954970000	오원자 (가맹본부 대표이사)	2034.01.06. (2034.01.06.)
			등록 제41-016059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 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 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종구면반상] 가맹사업 현황

1. [종구면반상] 을 시작한 날: 2017년 9월 9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해당사항없음)

2. [종구면반상]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맛있는 상상	종구면반상	오 원 자	2017.09.09. ~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6번길 4-35

3. [종구면반상] 업종

영업표지	업종	
종구면반상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맛있는반상(가마솥밥 한상차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종구면반상]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3		3	3		3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	3		3	3		3	3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종구면반상]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					3
2022	3					3
2023	3					3

[종구면반상]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종구면반상]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종구면반상]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12. 31
가맹본부	(주)맛있는 상상	찌개애감동	20080100148	한식	3/0	2/0	2/0
		월선네	20100100412	한식	11/0	8/0	6/0
		밥엔청국장	20140822	한식	3/0	3/0	3/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종구면반상] 가맹점 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지 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첨부자료 참조)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 체	3	529,249	3,796	671,771	9,957	369,842	1,299	3곳 산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	해당 없음						5곳 미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23년 말 기준 당사 3개 가맹점의 POS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하였음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공급 액, 시장 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사업연도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3곳	2,030일

상기 평균 영업기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 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종구면반상]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종구면반상] 외 3개 가맹사업 및 비가맹사업(카페탈로)의 광고를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어 각 가맹사업별 지출한 광고비를 분할하여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9]쪽을 참고하십시오.

당사에서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에 가맹사업 및 비가맹사업의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15,805,824원으로 근거는 별첨의 손익계산서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성남 분당지점	성남시 분당구 분당 3동 황새울로 347	031-725-8025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우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해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맛있는 상상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 신청서는 별첨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 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종구면반상]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8,500	-	-	-	-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계약해지시 반환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	-	-
계약이행보 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완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담보목적물	해당 없음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희망자의 동산에 질권 설정

보증금은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잔존 채무, 손해배상금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합니다.

3) 예치 가맹 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 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합계	18,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당비용 (기타비용)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총계	-	99,550	80,300	-	-	-	-	-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56,100 (고급형)	49,500 (보통형)	1,870 (고급형)	1,650(보통형)	착공 1일 전:60% 착공 20일 후:30% 완공 후:10%	공사 착공 전 계약취소	100㎡ (약 30평) 기준
간판	협력업체	3,850	3,300	-	-	공사 완료 시	제작 전 계약취소	-
주방 집기와 기물	협력업체	19,800	16,500	-	-	물품수령 후	제작 전 계약취소	총계
홀 기물 류	협력업체	11,000	5,500	386(상 한)	183(하 한)	물품수령 후	제작 전 계약취소	100㎡ (약 30평) 기준
소모품 등	가맹본부	3,300	2,200	-	-	물품수령 후	공급 전 취소	-
P.O.S 대금	협력업체	0	0	-	-	-	입고 전 취소	협력사 무상 제공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협력업체	5,500	3,300	-	-	상품수령후	상품 공급 전	간판

※ 별도공사 : 외부 공사, 소방 방염 시설공사, 전기증설공사, 철거공사, 화장실 공사, 덕트 외부 입상 공사. 가스공사, 후드 제작 등

※ 자체 구입 품목 : 냉. 난방기, 전자제품 일부 등

※ 공사비는 건물 구조 및 가맹점 사업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 (55만)원과 공사감리비 3.3㎡당 (11만)원을 공사 완료후 3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추가 지급 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가맹본부는 점포선정에 대한 상권분석 및 입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가맹점 입지를 선정하고 판단하는 최종 주체 및 책임자는 가맹점 사업자(가맹점 희망자)입니다.

6)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가맹사업(영업)이 가능한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조리 책임자는 자격증을 소유할 것을 권장함.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종구면반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 원)	18,500	해당사항 없음, 일시 납입				
납부일	계약 체결과 동시					
비고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 기준은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 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월 330	다음 월 10일	-	상표 사용 후	매월 납부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내용별로 분담	다음 월 20일	광고 발주 전	광고 발주 후	-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다음 월 20일	판촉 발주 전	판촉 발주 후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1일/165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실시 전	교육 실시 후	교육 필요시 또는 가맹사업자 요청 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협력업체	점포별 전적 가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간판 발주 전	간판 발주 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협력업체	전적 가	교체·보수 전 7일 이내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 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43 쪽 참조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3	다음 월 5일	-	-	본사와의 연결 A.S.P사용료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월 계속 가맹금 원·부재료 상품대금 지체배상금 위약 내용별 등 가맹 계약과 관련 하여 부담하는 일 체의 금전 지급 의무 지체시 부담
P.O.S 용지대	협력업체	0	-	-	-	협력사 무상제공

2) 구입요구 품목의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종구면반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의 거래를 당사의 사용인(대표이사)회사인 '종구면식품'에서 납품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영업 관리팀 (031-322-4611)
회계처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년 1회	문의: 영업 관리팀 (031-322-4611)
영업 관리	가맹점의 영업 현황과 서비스 점검	월 1회	문의: 영업 관리팀 (031-322-4611)
조리 관리	음식의 맛, 위생, 식품관리 점검	월 1회	문의: 조리 팀 (031-322-461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850	-	-	-	-
가맹비	해당사항 없음	-	-	-	-
추가 교육비	해당사항 없음	-	-	-	-
점포이전 비	3,850 가맹비의 50% 이내에서 협의하여 분담	점포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 시

당사는 계약 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3개월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사업 양도에 동의하여 가맹사업을 양수 한 사업자(신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와의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가맹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 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호, 상표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종구면반상]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맛있는 상상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 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종구면반상] 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 [별첨 3] 주요품목 별 공급가격 상·하한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종구먼반상]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권장하는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종구먼식품	사용인(대표)	 (비공개)		(비공개)

당사는 [종구먼반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소스 등의 주요 식재료를 당사의 사용인(대표이사)회사인 ‘종구먼식품’에서 납품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금액은 ‘종구먼식품’에서 2023년 동안 [종구먼반상] 가맹점에 납품한 총 공급가격입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종구먼반상]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강제 또는 권장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는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 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식사 류	맛있는반상 [제육볶음,가마솥밥,계절요리] 행복한반상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	-

	[쭈꾸미볶음,보쌈,술밥,계절요리] 종구면반상 [코다리구이,보쌈,술밥,계절요리]			
일품요리	제육볶음 쭈꾸미볶음 코다리구이 보쌈 홍어삼합	합니다. 또한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부에서 지정한 상품만 판매 하여야 합니다.	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음. 주류	양평지평생막걸리 대장부 대장부프리미엄 소주 카스 클라우드 콜라, 사이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 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제3자	원재료 및 공산품 일체	종구면반상 의 노하우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위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맛있는반상	13,000	개별 공문발송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	2023.12. 기준
행복한반상	18,000	“	“
종구면반상	18,000	“	“
쭈꾸미볶음	19,000	“	“
코다리구이(한마리)	13,000	“	“
보쌈	27,000	“	“
제육볶음	20,000	“	“
홍어삼합	45,000	“	“
녹두빈대떡	10,000	“	“
고추장고기전골	22,000	“	“
복분자주	12,000	“	“
백세주	7,000	“	“
지평막걸리	4,000	“	“

청하	5,000	“	“
맥주	4,000	“	“
소주	4,000	“	“
음료수	2,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	종구면반상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2km 이내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확정 한 경우에는 위 항목의 거리 기준 설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함.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 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 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 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종구면반상]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당사는 영업지역 내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 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 계약 및 갱신 기간

[종구면반상]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 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B, 아니오→ 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B, 아니오→ D	-
⑦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E, 아니오→ 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 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1항1호
○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1항2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6조1항3호
○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1항4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1항5호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6조1항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 사업자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9조1항1호

○ 가맹점 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 납입 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9조1항2호
○ 가맹점 사업자가 정기 납입 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29조1항3호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기준을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9조1항4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29조1항5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9조1항6호
○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29조1항7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9조1항8호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제15조의 즉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7조2항 37조4항
○ 계약기간 중에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37조 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 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2항1호
○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7조2항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2항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	

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7조2항4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2항5호
○ 가맹점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 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조2항6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37조2항7호
○ 가맹점 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7조2항8호
○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2항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관련 법 제정, 개정에 따른 경우	36조6항1호
○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36조6항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 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행사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 관리팀 (031-322-461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 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 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 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 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 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 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 의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 후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단,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교육 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행사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영업 진행	교육 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행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함.
업무 위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영업 진행	교육 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행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관할 지역 내에서 귀하가 [종구면반상]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 금지되는 업종	경업 허가 절차	비고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 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 관리팀 (031-322-461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종구면반상]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2:00 (1일 11시간)	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문의: 영업 관리팀 (031-322-46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원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명 이상	직접 근무 원장	가맹점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지명하는 자	가맹점 사업자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상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뉴얼 관리 (11개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관리 상태 확인 → 관리 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수시	관리팀 조리팀	-
서비스 관리 (4개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 표 작성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청결 관리 (15개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관리 상태 확인 → 관리 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기타 관리 (2개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 상태 확인 → 관리 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당사가 진행하는 위의 모든 관리, 감독은 가맹점을 일정 수준(품질, 서비스, 위생 등)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시 가맹점 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점검 표 서식은 첨부한 가맹점 순회 점검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종구면반상]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관측행사	할인행사	50%	50%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관측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증정 행사	50%	50%	"	"
	팸플렛 등 제작	50%	50%	"	"
	기타 개별 행사	행사 시행 전 부담비율을 정하여 공지		"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 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 제출일로부터 10 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 서비스 등의 종료 시까지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 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 문안 및 디자인에 대하여 사전에 본부와 협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0.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 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7일 내외	15~19 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
가맹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
가맹 금 예치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D-29(1일)	-
점포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
실내외 공사 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
교육 실시	- 점포 운영 교육 실시	D-7~4(3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개선 시 비용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 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 간판 교체 비 용 ○ 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 집 기의 교체비용 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 외)	○ 점 포 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 반하지 않 는 점포 환 경개선 : 20%	○ 가맹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가맹사업자에 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 맹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 지급절차> ○ 가맹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차에 걸쳐 부담액 을 분할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포 환경 개선 일로부 터 3년 이내 에 가맹본부 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 의 해지, 영업 양도 포함) 되 는 경우는 가 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이 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능
○ 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 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점 포 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 반하는 점 포 환경개 선 : 40%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 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 원, 부가세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 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 매출액에 따라 판촉 인원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 일로부터 3일간	50만원 한도	동금액의 물품으로 지원가능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 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 관리팀 (031-322-4611)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 관리, 위생관리,	가맹점 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영업 관리팀 (031-322-4611)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종구면반상] 가맹점 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종구면반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프랜차이즈 이해 서비스 이론 영업 노하우 세무 이론 조리 매뉴얼 관리 원가계산 손익분석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인력 관리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음식 가공 종업원 관리 등 경영교육	집단 강의 실습교육	본부의 필요나 사업자 요청이 있을 시	사업자 요청 시 1일(8시간) 당 165천 원 교육비 부담

2.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귀하가 [종구면반상]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내용	비용(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참석 대상	비고
신규 교육	경영주 입문교육	1일 (8시간)	물류배송 및 생산 시스템 소개, 인사, 노무, 세무관리, 마케팅 교육 등 점포 운영 전반의 이론교육	5,500	경영주	최초 계약 시 이수
	매뉴얼 교육	2일 (16시간)	조리 매뉴얼 및 서비스 교육		경영주 점포 직원	
	현장 교육	3일 (24시간)	즉시 활용 가능한 가맹점 현장 실습		경영주 점포 직원	

보수 교육	1일 (4시간)	매 교육 시마다 가맹본부가 결정	본부 부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 요청기간	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 요청 내용 위주의 교육	1일/165	본부의 필요시는 교육비 면제, 가맹사업자 요청 시 교육비 납부

※위 사항은 교육에 대한 예시이며 보수교육, 특별 교육에 대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 계약서 19조에 따라 1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 계약서 19조에 따라 1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 사업자가 불참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비용 지원, 판촉 지원 행사, 경영활동 자문 등 모든 본부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직영점 없음		
2			
3			

당사는 기준일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기준일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 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기준일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

[기재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작성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까지의 영업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관리 팀(031-322-461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wolsunne.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채무 상태 표 및 손익계산서 (2023~2021년도 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필수 공급 상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주요품목 별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가맹점 사업자의 인근 가맹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구분	가맹점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가맹점 사업자의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10곳은 정보공개서 교부 시마다 확인하여 작성 후 교부합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께서는 정보공개서 교부 시점에서 위 현황 표를 제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5. (주)맛있는 상상 가맹점 순회 점검 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6. 가맹 금 예치 신청서

(앞쪽)

가맹금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 명	종구면반상 점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맛있는상상 (종구면반상)	
	성명(대표자)	오 원 자	
	주소(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6번길 4-35	
예치 가맹 금		금일천팔백오십만원정(₩18,500,000)	
신청인의 계좌		성남 분당우체국 104869-01-006132	
가맹본부의 계좌		성남 분당우체국 104869-01-006129 (주)맛있는 상상 오 원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 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 신청인에게 본 가맹 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 금의 예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 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 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주)맛있는 상상으로부터 정보공개서 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 을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 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 을 제공받은 날 : 2024 년 월 일
2. 정보공개서 을 작성한 날 :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④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⑤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⑨가맹본부의 직영점현황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주)맛있는 상상 (인)	수령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절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주)맛있는 상상으로부터 정보공개서 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 을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 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 을 제공받은 날 : 2024 년 월 일
2. 정보공개서 을 작성한 날 :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④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⑤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⑨가맹본부의 직영점현황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주) 맛있는 상상 (인)	수령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